

어느 난민 가족의 한국살이 :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 용승
제1저자 대구대학교
(leeyongseung@daegu.ac.kr)



이 은정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anthro@yu.ac.kr)

국문요약

국내 정착 난민은 한국 사회의 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연구는 ‘이미’ 난민이지만 ‘아직’ 난민은 아닌 어느 가족의 한국살이를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성원의 자격’에 대해 고민해 볼 목적에 따라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전시하고, 이러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설파하는 학술적 관심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인 ‘성원권’(membership)에 주목하였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 공동체에 속할 자격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원이 되기 어려운 난민 가족을 사례로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유하였다. 성원됨의 하위 구성 요소를 지위, 공동체 친숙도, 사회적 연결, 권리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성원됨의 자격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은 공동체의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거주하고, 행위와 의견을 의미 있게 해줄 장소에 도달한 것이며, 성원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난민, 난민신청자, 성원권, 권리를 가질 권리

I. 문제의 제기

국내 정착 난민¹⁾은 한국 사회의 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연구는 ‘이미’ 난민이지만 ‘아직’ 난민은 아닌 어느 가족의 한국살이를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성원의 자격’에 대해 고민해 볼 목적으로 따라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전시하고, 이러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설파하는 학술적 관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인 ‘성원권’(membership)에 주목하였다.

난민 지위 획득 여부를 떠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희박했고,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태는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극적으로 높아진 계기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집단 입국,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입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난민 이슈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게 되면서 난민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사회통합과 갈등 등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여전히 유럽에 비해 난민이 중요한 공적 이슈로 다루어지는 빈도는 낮지만, 한국 사회도 점차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난민은 원래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성원권이 박탈되거나 거부된(한)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영토적으로) 새롭게 정착한 공동체의 성원권은 아직 미완인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는 모두 성원권이 미완의 상태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난민 인정이 거부되고, 인도적 체류조차도 협용되지 못한 ‘난민’은 최소한의 성원권조차도 거부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난민’에게는 성원권이 핵심적 이슈가 된다. 즉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이 될 수 있을까?, 성원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난민과 관련하여 가장 긴요한 물음이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주목한 사례는 이미 난민이 되어 타국인 한국에 도착하였지만,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난민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난민이지만 난민이 아닌 상황”(옴비 외 2013, 232)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위태로움과 곤궁한 처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가짜 난민이 아닐지 잔뜩 의심의 눈초리를 겨누고 있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간신히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사람들, 이미

1) 이 글에서 ‘난민’은 난민인정자, 신청자, 재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불인정자 등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한국에 ‘난민’으로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합법적 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난민은 우리 사회에 ‘아픈’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과연 우리는 이방인과 타자에 대해 호의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관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같은 성원으로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외면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어떤 절망²⁾에 대해 한국 사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나아가 우리는 나와 아주 다른 타자와 공존할만한 역량이 있을까? 등등. 질문은 던져졌고,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난민과 무국적자를 ‘권리를 가질 권리’ 자체가 박탈된 사람들로 규정하였다.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란 “권리들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리처드 번스타인 2018, 50) 아렌트는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재난은 그들이 생명, 자유와 행복 추구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의견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한나 아렌트 2019, 531)이라고 말한다. 아렌트 논리에 기댄다면 한국의 난민들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는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질문 이전에 ‘권리를 가질 권리,’ 즉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몫’(권리) 이전에 ‘자리’(성원권)가 먼저 마련되어야만 더 나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권리를 가질 권리’를 성원권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아렌트는 정치 공동체의 성원권으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제한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성원권의 범위를 훨씬 더 넓혀 정의하고자 한다. 즉 성원권이란 국적, 민족, 문화인종(ethnic), 인종(race), 체류자격, 신분, 성별, 계층, 소속 집단 등과 무관하게 단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member)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격, 인정 및 정체성을 말한다. 공동체는 아렌트가 주목한 정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 지역, 광역, 초국가, 지구 등 나선형 동심원으로 중첩된 형태를 가진 여러 단위의 공동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구성원은 국가 공동체를 상정할 때조차도 국적이나 시민권을 전제하지 않는다.³⁾ 대신 영토 공간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이 그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모두 성원의 자격을 가진다. 국가 공동체의 제도적 성원권(시민권이나 국적)이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nation-state)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성원의 자격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국가 공동체의 성원권도 법적 지위만이 다른 모든 성원됨의 하위요소를 무효화시키지도 않는다. ‘권리를 가질

2) 절망의 주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다.

3) 규모면에서 국가 미만 공동체나 국가 초과 공동체(초국적 공동체)에서 시민권 내지는 국적의 보유 여부가 공동체 성원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권리'에서 앞의 권리, 즉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는 해당 사회의 숙의 (deliberation)에 따른다. 다만 이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소극적 자유권과 안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공동체의 성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해당 공동체의 입회가 기존 회원들에게 수용되고, 스스로도 그것을 원할 때이다. 입회를 위해서는 모종의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자격이나 조건은 일정한 공헌이나 실적일 수도 있고, 미래에 약속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성원이 된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권리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공통의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됨’(nationhood)의 자격 조건을 혈통 (*jus sanguinis*) 혹은 출생지(*jus soli*) 등 출생과 연관하여 규정한다. 출생의 조건을 제외하면 입국 및 체류 등 귀화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제도적으로 상세히 규정한다. 국적이나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 한시적 체류권 등을 통해 구성원을 위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국가 구성원이 되는 제도적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권에 속한다.⁴⁾ 국가는 간혹 제도 밖에 구성원을 위치시켜 통치는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다. 미등록 체류자가 이들인데, 이들은 종종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된다. 국가 공동체의 성원은 위계에 따라 차등적 권리가 부여되고, 부담하는 의무에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중부의 특정 국가 출신 난민 가족을 사례로 위에서 논의한 성원권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 제도적으로는 아직 구성원이 아니지만 이미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가족의 사례를 통해서 ‘누가 성원이 될 수 있으며, 성원의 자격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난민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이주민 중에는 가장 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법적 지위로서의 성원권을 얻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경험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난민 가족의 사례를 통해 위에서 주장한 성원권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보려 한다. 한국에서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예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성원권의 구성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성원의 자격에 대해 재사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누가 성원이고, 성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잠정적 답을 제시할 것이다.

4) 난민수용과 처우의 경우는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때에도 최종 판단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난민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먼저 법과 제도, 정책, 주류의 반응 등 난민의 적응 환경에 관한 연구가 첫 번째 흐름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난민의 한국 생활 적응을 연구하고, 이들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제언을 다룬다. 첫 번째 연구의 경향으로서 양혜우(2019)는 난민이 처한 혐오의 환경을 연구한다. 난민에 대한 혐오는 외국인에 대한 사소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국가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혐오로 부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혐오의 주요 논거를 사실을 기반으로 논박하고 그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주민을 다루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향한 혐오 발화의 원인을 추적한다. 김현미(2018)는 제주 난민 입국을 사례로 들어 난민 혐오의 작동 방식을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조급주의, 치안담론, 신인종주의, 국민특권주의가 난민 혐오를 낳았고, 대안으로는 인간안보 관점의 채용, 상호관여의 윤리, 공동체적 연대를 제시한다. 이유혁(2017)은 유럽과 국내 난민에 관한 앞선 연구를 활용하여, 난민이 생존투쟁의 과정에서 자신을 정치적 주체로서 (재)인식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그의 연구는 성원의 자격을 논하고자 하는 이 글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는 난민의 한국 사회 적응 연구이다. 법무부 지원으로 김현미 등(2010)이 수행한 연구는 최근 난민의 처우 및 적응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이다. 40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25사례의 심층면접을 통해 난민의 취업, 주거, 의료, 교육, 가족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미래계획 등을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의 책무성과 인도주의적 관점을 강조하고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각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박미숙(2019)은 난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월경 동기,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열식으로 짚고, 인식개선, 취업 및 심리 지원 등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박순용, 서정기(2014)는 특정 국가 출신 난민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주난민으로 살아가기 경험에 대한 범주화’를 하고, 각 경험 범주의 하위 주제에 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 글은 난민을 단지 피해자 서사에 묶어 놓지 않고 행위 주체성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박순용 외(2020)는 한국의 난민 현황 및 제도, 줌머인과 콩고 출신 난민의 미시적 삶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난민정책을 거쳐 난민의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언에 이른다. 한국에서 난민 삶의 실재에 대한 의미탐색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곤경을 전시하고, 대안을 내는 기존의 익숙한 연구 패턴에 갇혀 있다.

한국에서 난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담론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인도적

이유, 국제적 책무, 법적 절차(난민법) 집행의 관점 등이 근거로 작동된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주장에는 가짜 난민과 같은 치안의 문제,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경제적 이유, 국민 보호의 관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이 뜨거운 논쟁의 본질은 한국 사회에서 ‘누가 성원이고, 또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가 공동체를 사례로 들어 성원을 설명해 보면, 가장 협소하게는 국적자, 조금 더 넓은 범주로는 민족,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주민’,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거나 한국인의 피를 조금이라도 나눠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청소년이 될 수도,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문화)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가장 광범위하게는 필자들이 규정하는 것처럼 영토 내에서 구체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성원이라 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누가 성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천착하여, 어느 난민 가족의 한국살이를 사례로 들어 이 질문에 응답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원권은 보편적 인권을 통해 난민의 보호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성원의 자격에 기초한 성원권은 인권과 달리 특정 공동체를 상정한다. 인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종종 국경을 넘어서면서 내용과 실제가 변화를 겪는다. 인권의 보편성은 변함이 없는 지향이겠지만 그것은 저 멀리 천상에 존재하는 것일 때가 흔하다. 아렌트가 ‘권리를 가질 권리’를 말한 것은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힘을 가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는 유명무실해진다는 자기경험에 기반을 둔 통찰에서 출발한 것이다.⁵⁾ 성원권은 국가공동체를 비롯한 공동체 성원의 자격에 따른 지위, 관계, 권리, 정체성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원권은 근대 국가 체제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민족)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물론 지구공동체의 성원권까지 사유를 확장한다면 그것은 인권과 거의 겹치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난민의 삶을 말할 때, 지구공동체는 규범적 의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아렌트와 같이 국경과 공동체의 권한(국가의 경우 주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아렌트와 달리 국적이나 시민권의 보유와 무관하게 단지 성원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고 본다. 이것이 우리가 성원권을 고민하는 이유이다.

난민의 성원권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권에 대한 연구와 난민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성원권의 영역을 제시해보았다.⁶⁾ 윌케(Joppke 2007)는 시민권을 세 가지 측면,

5) 그는 “(인간) 특유의 정치적 특성들을 모두 뒤집어버리고 오로지 인간일 뿐인 사람들은...인간에게만 고유한 행위의 자유를 상실한다.”(한나 아렌트 2019, 540-1)고 말한다.

6) 성원권을 영역을 확정짓는 데, 시민권의 내용을 활용한 것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듯하다. 통합의 영역을 성원권을 사유하는 데 포함시킨 이유는 성원권이 어떤 완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같이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사회통합의

즉 지위, 권리, 정체성의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용승(2014)은 지위, 권리, 정체성의 영역에서 시민권과 다문화적 권리가 내포하는 아포리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민권의 하부 구성 부분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오랜 동안 난민의 사회통합을 연구해 온 Strang과 Ager(2008; 2010)는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난민 통합 정책의 변화 흐름을 통해 난민의 사회통합 영역을 기반(foundation), 촉진자(facilitator), 사회자본, 사회적 권리 등으로 나누고 이들 영역 간의 상호성을 분석한다. 기반은 시민권(국적) 내지는 권리, ‘국민성’과 관련한 영역, 촉진 요인은 언어 능력, 문화적 지식, 안정성 등 통합 과정을 도와주는 요인, 사회자본은 같은 국가나 민족 출신자들의 결속(bonds)을 포함한 사회적 연결성, 통합의 마지막 고려 분야는 노동, 교육, 주거 등의 사회적 권리 영역이다.

시민권의 하위 구성부분과 통합 영역을 같이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성원권 내지는 성원됨을 구성하는 내용물로서 시민권(국적) 내지는 체류자격과 관련된 지위, 언어와 문화 역량을 포함하여 공동체에 대한 친숙함, 사회적 연결성과 인정(recognition),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한 권리 등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위는 난민인정자, 귀화자,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출국유예자 등과 같이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지위와 연관된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핵심 질문은 법적 지위가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성원이 될 수 없는가이다. 둘째, 친숙함은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체에 익숙하거나 적어도 익숙해지는 것에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연관된다. 해당 공동체의 언어나 문화, 관습에 친숙하지도 않고, 특별히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 성원의 자격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적 연결성은 동료 성원들과 개인적, 집단적인 관계의 영역이다. 관계는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넷째, 권리영역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터의 소극적 자유(안전, 징수금 등)와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의 사회적 권리를 말한다. 또한 성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성’(initiative) 내지는 주체적 삶의 권리도 성원의 자격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인 “주도력과 (그에 따른) 책임은 개인이 쓸모 있고, 심지어 불가결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필수적 요소”(Weil 2002, 14)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난민의 성원권 논의를 추상적이고 개념적 차원에서만 전개시키기 보다는 현실적합성 있는 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난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에 참여해 줄 난민 구술자를 찾는 일은 까다로웠지만, 이주 문제 활동가, 이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 신문사 기자의 협조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필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완성형을 상상할 수 없듯, 완전한 성원권(full membership)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고 보았다.

대구 지역의 난민을 섭외하기 위해서 우선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연구에 적절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이들을 취재한 신문사 기자의 도움으로 난민 자밀라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자밀라는 큰 거부감 없이 집주소를 알려주고 방문을 허락해 주었다. 인터뷰는 자밀라의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한번은 부인인 자밀라가 응해주었고 또 다른 한번은 남편인 우마르가 응해주었다. 인터뷰는 최대한 대화처럼 이끌어내는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할 때마다 딸 네 명은 늘 함께 했다. 자택에서 진행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구술자의 삶의 맥락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의 기획에 대해 설명해주고 익명⁷⁾을 전제로 한 동의를 구했다. 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하기에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이후 자료 정리를 하던 중에 이들 부부와 난민 다큐 출연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아프리카식 불어가 구사가능한 통역자와 연결되었고, 그 당시 인터뷰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 참고하였다.⁸⁾

자밀라는 난민재신청자로서 2021년 7월 취업허가 행정소송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한겨레 2021/07/06).⁹⁾ 당시 이 소송의 주최자인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하였고, 취업허가 행정소송의 과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외에도 세이브 더 칠드런 난민아동지원사업을 담당한 가톨릭회관 담당자, 2022년부터 난민아동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 ‘이주와 가치’ 대표를 통해서도 대구지역 난민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인터뷰에 응해준 자밀라 가족 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하겠지만 논문으로 고마움을 갈음해 본다.

III. 난민의 성원권

1. 지위

한 인간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식적 지위와 그에 따른 소속감이 필요하다. 지위의 공식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 수립 이후에는 해당 국가의 신민 혹은 국민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7) 이 글에서는 연구참여자를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8) 성원권 논의는 국내 정착 이후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통역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국내 정착하기까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인터뷰와 글 작성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9)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02430.html> (검색일: 2022. 01. 16.).

절차와 제도적 표식이 있었다.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현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공식 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제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혹은 국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국적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담고 있는 국적법 혹은 시민권법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 거주나 시험과 같은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충성서약이나 ‘국민됨’의 내용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2018년 시행된 영주권 전치주의나 ‘국민선서’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난민은 설령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화하지 않은 이상 아직 온전한 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난민신청자이거나 인도적 체류자, 난민 불인정자 등은 성원으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자밀라 가족의 경우 남편은 2009년 비즈니스 비자로, 자밀라 본인은 2013년 어학연수 비자로 각각 입국하였고, 대구에 정착한 이후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들은 단순 체류를 인정해 주는 G-1비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등록증이 없고, 종이에서 연장해 주”는 3개월 기한의 ‘출국 유예 증서’에 의존하여 거주하고 있다.¹⁰⁾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취업허가를 따로 받아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출국 유예 증서는 취업조차도 불가능하다. 불법취업이 아니면 생활은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여타의 난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성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 공동체로부터 제도적인 성원권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현실에서 이미 이들은 지역사회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는 미시부터 거시까지 나선형 동심원으로 중첩된다. 비록 국가의 자의적 처분에 맡겨져 있는 국가 공동체의 법적 성원 자격은 없을지라도 이들은 직장, 학교, 종교 공동체, 지역사회 등 여러 중첩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이미’ 존재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필자들은 성원권을 ‘권리를 가질 권리’와 연관하여 정의하면서,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해당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와 정체성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 특정 공간을 공유하고, 그곳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성원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은 이미 우리 사회 성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위는 성원됨의 지표이자 여타 성원권에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법적 지위가 아니라 성원 간의 상호 인정을 통해 구성되는 지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영역, 즉 공동체 친숙감, 사회적 연결, 권리 등에 의해 회정되는

10) 자밀라는 인터뷰 당시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해당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공식 명칭은 “출국기한유예 허가 통지서(Notification of the Postponement of the Termination of Departure)”이다. 다행히 그녀는 인터뷰 다음 날 추가 3개월의 유예 통지 결정을 받았다.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법적 지위는 귀화부터 임시체류 허가까지 여러 형태일 수 있고, 심지어 법적 지위가 말소되어 추방의 대상일지라도 실질적 성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공동체의 영토에 뿌리내리고, 그 삶의 양식에 친숙하고, 또 친숙해지려고 의지하고, 여러 형태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누리고 있다면 그/녀를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이렇게 보면 법적, 제도적 지위는 성원 자격의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보완될 수도 있고 혹은 형해화될 수 있는 개연성 또한 잠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법적 자격과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원의 기본권과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官)의 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¹¹⁾

자밀라 가족은 비록 법적 지위는 얻지 못했으나 자밀라는 2021년 취업허가 소송(‘체류 자격외 활동 불허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고, 우마르는 난민지위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법적 지위는 여타 성원으로서의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 소송은 난민신청자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취업허가 소송의 경우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보통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갖지만, 체류 자격 자체가 불안정한 난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¹²⁾ 난민들이 제기한 취업허가 소송이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은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소송의 당사자 능력, 즉 성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시 아렌트(2019, 533)의 말을 빌면, 자밀라의 소송은 ‘박탈당한 행위의 권리와 상실했던 언어의 타당성’을 되찾는 행위이다. 비록 법에 근거한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또다시 법에 근거해 성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1) 존슨(Johnson 2015)은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배제에 저항하는 도심 난민 캠프 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시민 시민권’(noncitizen citizenship) 혹은 ‘비시민권’(noncitizenship)을 주장한 바 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의 성원권이라는 면에서 이 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존슨의 말을 이 글의 의도에 맞게 조금 바꾸면 ‘비시민 성원권’(noncitizen membership) 정도가 될 수 있겠다.

12) 2017년에도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업허가를 내주면서 소가 취소된 적이 있으니 자밀라가 제기한 소송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 받은 소송은 자밀라와 동료들이 낸 소송이 최초이다. 출처: <https://apil.or.kr/?p=20> (검색일: 2022. 01. 15.).

2. 공동체에 대한 친숙함

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영역 가운데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친숙함이다. 안정된 법적 지위가 있다손 치더라도, 난민이 소속된 공동체와 도저히 친숙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난민이 현재 소속된 공동체에서는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공동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때에는 그를 온전한 성원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사례 난민 가족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친숙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성원이 가지는 공동체의 친숙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언어능력, 문화에 대한 지식 혹은 익숙함, 안정감, 안전하다는 느낌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친숙함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겠지만, 그럼에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안정감, 안전 등을 친숙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밀라 부부의 한국어 능력은 가벼운 일상대화가 가능한 정도였다. 단순한 노동과 간단한 장보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교류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서 한국어 능력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받아온 문서를 이해하는 문해력, 정부의 이민정책 뉴스를 이해하는 능력,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근거 등에 대한 문해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문서 해독 능력은 큰 틀에서만 이해할 수 있었고, 세부사항에 대한 접근은 힘들어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첫째 가니야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아난은 한국어 실력이 또래 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가니야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한글 독해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다. 가니야와 아난은 한국어가 제1언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 인터뷰를 위해 자밀라를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지인에게 받은 긴 문자를 보여주면서 해독을 부탁하는 일이었다.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미등록 아동과 그 부모의 체류자격 인정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었다. 자밀라는 법무부 발표의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상세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들이 전달하는 자세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자밀라는 한국어 연수 비자로 입국, 6개월 가량 대학 어학당을 다녔다. 임신으로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으나 소송이나 병원 등에서 통역을 수행할 정도로, 적어도 자기 주변의 아프리카 출신 불어계 난민신청자와 비교하여서는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지금도 일을 하는 틈틈이 아프리카 출신 불어계 난민들을 위해 병원, 출입국관리소 인터뷰 등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남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구리”라고 할 정도로 자신 주변과 관련한 일상용어를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우마르의 경우에는 자밀라보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었음에도 자밀라와 비교해 한국어 실력이 다소 떨어졌다. 높은 문해력이 필요치 않는 단순 노동에 주로 종사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다. 언어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한국 사회와의 접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자밀라의 역할이었다.

성원권과의 연관에서 안정감은 해당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과 관련이 깊다. 해외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친근감-웃거나, 거리에서 인사하는 조차도 난민의 안전하다는 느낌과 안정감,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Strang and Ager 2010, 599). 고된 노동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전에 없던 소속감이나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은 늘 뿌듯했다.”고 말하는 욘비(욤비 외 2013, 158)에게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속감과 연관된 안정감은 규모가 큰 국가공동체보다는 마을이나 동네, 일터와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더 잘 통용되는 감정이다. 이들에게 가족은 안정감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적 지위와 사회적 연결망의 부족, 이에 따른 소속감과 안정감의 부족에 기인한 일종의 상실감은 가족 공동체가 상당 부분 해결해 주고 있는 듯했다. 자밀라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 과정 동안 이들의 가족 간 애착과 화목함은 가감 없이 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자녀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들 가족이 서로에게 느끼는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마르는 일터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일꾼이다. 가끔 아파트 공사장 일터에서 딸이 네 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사들이 일당을 더 챙겨주기도 한다는 구술, 일의 숙련도가 뛰어나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 불러주는 곳이 많다는 구술 등은 우마르가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자밀라는 설령 난민 인정을 끝내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아직 고국을 떠난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한국에 대해 가지는 애착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본국과 비교하여, 적어도 안전의 측면에서는 더 높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난민은 기본적으로 본국에서의 박해, 즉 안전(human security)의 위협에 직면하여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피난처는 보통의 경우 본국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¹³⁾ 비록 개인적 안전은 부족하게 누리고 있을 지라도, 적어도 한국은 공적인 안전에서 있어 난민 가족들에게는 본국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공동체의 성원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과 안전, 언어, 문화적 능력에 기반

13) 피난처가 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안전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유엔인권위 자문위의 장 지글러(2020, 165)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1차 접수 시설’인 핫 스폽(hot spot)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그는 피난처가 수용소만도 못한 환경에 난민을 방치하여, “공포심을 야기하고, 박해받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탈출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친숙함을 확인해 보면, 이미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들 가족의 자녀들은 무국적자로서 체류자격도 없고 한국과 본국 어디에서도 출생의 사실을 ‘서류’로써 증명할 길이 없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교육 받고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 경찰관을 꿈꾸고 있는 “둘째 아난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밥과 김, 김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한국적 문화 문법을 따르며, 한국 사회에서 제 역할 할 수 있는 성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¹⁴⁾ 사례 난민 가족의 한국 문화에 관한 친밀도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차이가 있었다. 부모 세대는 바게트 빵을 직접 구워 초코 크림과 핫초코를 곁들이는 식사를 선호한다면, 자녀 세대는 지극히 한국적 음식에 관한 선호가 있다고 한다. 이는 자녀 세대가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급식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가족 전체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슬림 식사 에티켓은 준수하고 있다. 추후 가족 내에서 한국 문화 친밀도의 차이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자못 궁금하지만, ‘한국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이 본국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에도 영향을 줄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3. 사회적 연결성

사회적 연결성 혹은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은 누가 성원의 자격을 합당하게 보유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하여 법적 지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연결망이 희미하고, 참여가 거의 없다면 법적인 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사회적 연결성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례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종교(이슬람교)에 기초한 연결망은 취업과 생활 정보 공유, 종교 생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자밀라는 같은 무슬림인 “우즈베키스탄 언니 있어요. 어디 알바 있으면 알바 하러 오세요. 우리한테 연락와요.”라고 말한다. 이 언니는 구미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모로코) 친구가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할랄푸드가 비싸”서 한국에서의 무슬림으로서의 삶이 조금 불편하지만, “야채, 과일, 생선”은 시장에서 구매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우마르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에도 금요일에는 반드시 무슬림 사원을 찾아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어울린다. 무슬림은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종교에

14) 자밀라는 자녀들이 한국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약간의 우려가 있는 듯했다. 모국어를 가르치거나 내년에는 본국에 방문할 거라고 약속하는 등, 본국 정체성 유지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비해 크기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연결망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¹⁵⁾

자밀라는 아프리카 출신 불어계 난민들이 병원에 가거나 관과 협의할 일이 있을 때 통역을 자처했다. 이러한 활동은 어려운 무슬림을 도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다. “우리 무슬림은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니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못하면 기도해 줘요. 진짜 무슬림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이주민이 “기대와 의무의 교환 없이 자발적으로 이주민들의 사회자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당연한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고한 이은정·이용승(2015, 126)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가족과 같은 출신국 사람들 모임은 “대구 화원, 경기도 송탄, 서울”에 있다고 한다. 자밀라는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화원 모임에는” 간혹 참여한다고 한다. 난민의 경우 본국에서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본국 출신 모임을 달가워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자밀라의 가족도 본국 출신 모임보다는 광범한 무슬림 모임 등에 더 방점을 두는 뉘앙스였다. 본국 출신 모임에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본국의 가족들하고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화상통화를 한다. 우마르의 경우에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본국에 있는 친구와 페이스톡으로 자주 연락을 함으로써, 초국가적인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원되기’는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이다. 먼저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의지의 문제이다. 성원임에도 성원되기를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그를 성원이 아니게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한다. 역으로 성원이 되고자 한다면, 성원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마땅히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정으로서 기존 구성원의 수용과 인정의 문제가 나선다. 아무리 성원이 되고 싶고, 성원이라고 스스로 주장한들 기존의 구성원들이 성원으로 인정(recognition)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원이 되기는 어렵다. ‘성원되기’의 양방향성을 고려해 본다면 난민과 주류사회와의 접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례 난민 가족이 맺고 있는 주류와의 연결선은 당연하게도 난민지원단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난민아동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가톨릭 회관이 이들의 첫 번째 연결 지점이었다. 가톨릭 회관을 매개로 한 주류와 접점은 여전히 지원 관계로 얹혀 있었다. 지원 관계는 취업소송 당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와 지원 변호사로 확장되었다. 두 번째 주류와의 연결지점은 일터, 학교 등 구체적인 일상공간에서 형성되는 연결망이었다. 우마르는 우연히 집 앞에 세워둔 차의 이동을 요청하

15) 자밀라는 하루 5번 하는 기도, 자녀에 대한 무슬림 교육(“가니야, 아난 말 시작하면 공부해야 해요. 한국 나이 말고 우리 나이 네 살 되면 공부 시작해요.”), 핸드폰에 설치된 메카 방향 및 기도 시간 알림이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기 위해 걸었던 전화가 계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같이 일하고 있다. “공구리” 실력이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해서 인기가 좋다.¹⁶⁾

자밀라는 첫째 가니야의 동급생 엄마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일례로 가니야가 놀러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면 동급생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가니야의 소재를 파악하곤 한다. “서류”가 없어서 휴대 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가니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급생 엄마에게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적 연결망이 나름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녀들의 친구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온다는 것으로 보아서 자녀들의 학교생활도 무난하리라 짐작된다.¹⁷⁾

설을 앞두고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때, 집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새우튀김과 과일을 잔뜩 건네면서 무슬림의 음식문화를 염두에 두고 “돼지는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가족과 집주인 가족 간의 상호이해가 돈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적인 친밀감과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밀라의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니야와 함께 방문했을 때, 사장님은 이들 가족이 좋아하는 과자, 과일, 음료를 잘 알고 있었다. 가니야에게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입었니?”라고 말을 건넸고, 필자들에게는 “애들 엄마 참 열심히 산다.”고 귀뜸해주기도 했다. 집주인과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이들 가족에게 느끼는 호의에 응답하듯이 우마르는 “한국 사람들은 100명 중 나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말했다.

난민의 사회적 연결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류 사회의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한 난민 가족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요한 만큼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난민 일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미디어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주류 사회의 낮은 수용성이 난민의 사회적 연결망을 제약하고 확장을 더디게 하겠지만, 성원 자격의 주요 구성 부문으로서의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대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본국을 도망치듯 떠나오면서 ‘상실한 모든 인간관계’(한나 아렌트 2019, 533)를 새로운 장소에서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4. 권리

권리는 자격을 갖춘 성원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고정되어

16) 우마르의 일터는 집에서 걸어서 닿을 거리에 있는 다섯 군데 정도의 아파트 공사 현장이다.

17) 이 부분은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큰 문제는 없는 듯했다.

있지 않다. 어느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가 부여하지 않았고, 주고 싶지 않은 권리일지라도 획득될 수 있기도 하다. 영주권자의 투표권, 미등록체류 자녀의 교육권, 임시 체류자의 노동권, 미등록 체류자의 의료권 등 한국 사회가 점차 외국인에게 확대해온 권리의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권리 부여는 체류 자격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면서도, 그것 없이 주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권리는 공동체 성원의 가장 명징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자밀라 부부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는 초등학생이고, 둘째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셋째와 넷째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적용되어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세이브 더 칠드伦’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해당 기관은 최대 2명까지 각 30만 원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한다. 30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은 자밀라의 뜻이었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만¹⁸⁾ 아직 국가 차원의 보육료 지원은 시행되지 않기에 어린이집 비용은 다른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한국 정부가 그나마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분야이다. 정부는 2012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초중등학교에서 알게 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였다(84조). 그 이전에 2010년 법무부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초중등 학교에 취학 중인 미등록 아동의 강제출국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11월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미등록 이주아동도 고등학교까지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¹⁹⁾ 2020년 경기도 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²⁰⁾ 주요 내용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 법제화와 차별 철폐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정책 마련 촉구이다. 비록 국민과 같은 수준의 아동 보호가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난민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일부

18) 안산시는 2018년부터 부천시는 2020년부터 외국적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참고로 난민법(33조, 43조)에서는 난민인정자와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자의 경우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로, 신청자의 경우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19)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009> (검색일: 2022. 01. 14.).

20) 출처: <https://www.ggc.go.kr/site/agendaif/app/agndsrchList/DetailView/6034> (검색일: 2022. 01. 14.).

누리고 있다.

미등록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 2월부터 다소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법무부 2020). 정부는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년에서 7년 체류 조건을 충족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모에게는 임시체류자격(G-1)이 부여되고, “양육을 위한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체류 자격외 활동은 취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부모의 취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사례 가족도 첫째 가니야와 둘째 아난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6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한시적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이들의 지위는 한층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성원권에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한다.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사례 난민 가족은 합법적 노동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보통 난민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달고 있어 1차 난민 불인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나 소송 기간에는 좀처럼 취업 활동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합법적 취업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합법 취업을 하지 못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자밀라 가족 또한 보험이 적용되었던 둘째를 제외하고 첫째와 셋째, 넷째는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였고, 또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장시간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받았다. 매번 약 3천에서 4천만 원가량의 병원비는 이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또한 감기나 가벼운 질병에도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회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시체류 자격인 G-1 비자를 가진 난민이라도 의료지원대상에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20).²¹⁾ 사례 난민 가족은 G-1 비자의 소지 여부, 취업 허용 등에 따라 권리로서 의료 접근권에 변동이 있었다. 건강권은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많이 부족한 대로 권리 일부는 보장되고 있었다.

자밀라는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때에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자밀라가 선택한 방법은 미디어를 활용한 모금이었다. “도움을 받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인터뷰에 응했고, 후원금을 모아 병원비를 지불하였다. 자신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21) 출처: https://www.129.go.kr/info/info04_view.jsp?n=1463 (검색일: 2022. 01. 20.).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태도는 이들이 이미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신의 딱한 사정을 전시하고 그것을 통해 후원을 얻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²²⁾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한국살이에서 주체성(agency)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주도력(initiative)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체성과 삶의 주도성은 단지 미디어의 활용에 그치지 않는다. 자밀라는 취업 허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고,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에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난민재신청 심사 중인 자밀라가 취업허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자밀라는 소송 참여자 가운데 한국어에 가장 능통한 난민으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발언하는 것은 물론 통역도 수행하였다. 또한 행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존슨(Johnson 2015)이 말한 것처럼 비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공동체의 정당한 성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난민 가족 사례를 통해 접근해 보았다. 성원의 자격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서 시민권과 사회통합의 영역을 혼합하여 지위, 공동체 친숙도, 사회적 연결성, 권리를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성원의 자격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난민 가족이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지위는 부여받지 못했으나 그와 무관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미 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만약 성원권을 중심으로 난민의 정착과 적응, 주류 사회와의 접촉과 통합을 사고한다면, 이들의 법적 지위는 사실 가장 긴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난민 지위’를 획득하여 안정된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될 수 있고, 국내에서 법적으로 난민 인정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또한 법적 지위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성원의 자격을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역에서 구체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는 난민들은 이미 성원으로서 존재하고

22) 국내외를 막론하고 난민이나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는 대개 후원금과 모금에 의존하여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난민, 이주민의 절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모금이나 후원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다. 워비(워비 외 2013, 157)도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머무를 당시 탈장으로 수술을 받았고, 막대한 수술비는 ‘성동구이주노동자센터’의 모금으로 충당했다. 자밀라는 이를 본인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성원의 요건으로서 제시한 공동체와의 친숙함에서 난민 가족의 한국어 능력, 문화적 친밀성, 안정감, 안전하다는 느낌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일터와 학교 등지의 일상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와 문화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첫째와 유치원을 졸업하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의 경우는 한국어가 제1언어임은 물론 부모가 아이들의 본국 정체성을 염려할 정도로 한국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또 우리는 공동체에서 느끼는 안정감의 원천으로서 가족관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안정감을 엿보았다. 안전하다는 느낌은 설사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밀라의 말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난처로서 정착한 한국이 당연히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본국에 비해 안전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을 덧보탰다.

세 번째 성원 자격의 구성요소로서 살펴본 것은 사회적 연결 혹은 유대감이다. 사례 가족은 종교적 유대를 기초로 이주민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난민 지원을 매개로 한 연결망, 일터와 학교, 거주 등을 매개로 한 주류 사회와의 접촉면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난민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암묵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점차 사회적 연결망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 영역에서 자녀의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을 살펴보았다. 자녀들의 교육권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받고 있었다. 노동권은 취업허가 소송에 나서야 할 정도로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성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의료 접근권으로서 건강권은 체류자격의 변동에 따라 부침이 있고, 가장 취약한 권리 분야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취약한 건강에 대한 권리는 이들 가족이 삶에서 주도권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난국에 직면하여 사회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적극성은 이들이 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예증한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제주 난민 집단 유입 당시에 일었던 극단적 혐오 정서의 시현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외려 난민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대체로 난민에 무관심하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가 적기도 하고, 그로 인해 난민은 한국 사회와 우리 일상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 감정이 수면 아래 위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를 완화할 수 있을까? 혐오 감정을 유발한 이른바 '가짜 뉴스'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인가? 만약 혐오 정서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진실'을

대면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진실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진리라기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 또 어쩔 것인가? 차분한 토론과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공론장이 있다면 사실의 공유가 인식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각자의 해석만을 진리로 내세우면서 나와 다른 의견에는 적대로 응대하는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토론을 통한 상호 설득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와 같고, 이는 비단 난민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측면에서 난민 이슈는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여론에 쉽게 굽복하고 만다. 500여 명의 제주 입국 예멘인 가운데, 난민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여론에 응답하였는지를 응변한다. 만약 여론이 안 좋아서 그랬다면 조금은 다행일지도 모를 일이다. 실상은 정부 자체가 이들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치안’의 관점에서 “비호는 고사하고 난민을 더 ‘난민화’하는 상황”(김현미 2018, 217)의 주요 행위자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난민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체류 연장을 위해 난민 신청을 악용(소위 ‘가짜난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더 많은 난민이 유입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난민에 판대한 조건이 난민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한과 통제의 강조가 난민이 그 사회에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발신할 개연성이 높다.”(Strang & Ager 2010, 595). 관이 난민을 대하는 태도는 시민의 태도를 반영한 것일 수 있지만, 역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즉 관의 태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향후 난민 연구는 이들의 일상과 삶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비단 ‘국민’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미 성원이지만 ‘국민’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을 품어 주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대다수의 연구 및 실태조사는 당연하게도 이들이 처한 곤궁을 증언하고, 그 곤경의 원인이 되는 정책적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무관심과 편견, 차별과 배제, 혐오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난민 연구가 여전히 생소할뿐더러 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는 도전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²³⁾ 이 연구는 새로운 시작의 작은 출발이고 싶다. 연구 기획에 따른 목표 달성이

23) 학술연구는 아니지만 난민의 삶과 일상에 대해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출판물들이 많아지고 있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여성들의 고통과 치유, 자립을 담은 박진숙(2019)의 “저도 난민은 처음입니다만,”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용비가 구술하고 박진숙이 번역하고 살을 붙인 “내 이름은 용비”(용비 토나 외 2013), 난민 어린이를 주제로 한 동화 “나만 없는 우리나라”(곽지현 외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권 등에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미래가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진전되어 왔고, 국민들의 의식도 점차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제주난민 집단 입국 당시 보이던 태도와 2021년 아프간 난민 입국 때 여론은 상당히 달랐다.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호명 대신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을 영리하게 부여하면서 수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난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를 모르지 않을 국민들은 큰 거부감 없이 이들을 수용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부상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거부감은 줄고, 관용의 정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례 난민 가족의 이웃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들을 호의적 태도로 대하고 있었다.

이 글은 ‘이미’ 난민이지만 ‘아직’ 난민이 아닌 사람들을 사례로 이미 성원이지만 아직 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어디쯤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난민을 사례로 성원의 자격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들, 특히 난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미 성원으로서 한국과 그 너머 (transnational)의 삶을 적극적으로 일구고 있는 사람들을 성원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배제한다면 그것은 어떤 후과를 낳을까. 밀(J. S. Mill)은 ‘자유론’에서 의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논쟁을 통해 더 나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에 해악적이라고 한 적이 있다. 같은 논리로, 성원의 배제가 구체적인 손해를 가져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배제는 적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문화다양성을 옹호하는 것은 어떤 문화가 인류가 처한, 처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이질적 문화를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의 새로운 성원이 된다는 것은 삶의 지혜와 또 다른 가능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다. 난민 가족들을 만나면서 필자들 또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녀들의 유쾌함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힘들어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손쉽게 자본과 시스템이 해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이러한 점은 낯선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 생각한다.

이 글이 정식화한 성원의 자격 혹은 성원권은 지속적인 ‘과정’의 영역일지도 모른다. 성원됨 내지는 성원권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체의 상호작용의

2021) 등은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미 우리 사회에 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자의 시선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진 난민인정자의 삶을 보여주고, 제주 난민 유입을 가까이서 다룬 이재호 기자의 글(이재호 2019)도 한국 사회 난민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과가 낳은 순간적이고 반복되는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시기에 드러난 성원권은 고정된 실체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용의 과정에 있다.²⁴⁾ 지금 드러난 성원됨의 현실은 변용의 과정에서 우리가 인식한 것일 뿐이고, 실상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는 완전한 성원이고, 누구는 부족한 성원이라기보다는 누구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으로 획정지을 것인가는 공동체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탈구, 재구성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더 많은 품위와 고결함을 보유하면 할수록 성원됨의 자격은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성원권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존슨(2015)은 시민과 ‘시민 아님’의 ‘미세한 선’(fine line)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는 성원권을 통해 그 선조차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권의 박탈은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 견해와 행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장소의 박탈”이라고 아렌트(2019, 532)는 말한다. 그러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은 공동체의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거주하고, 행위와 의견을 의미 있게 해줄 장소에 도달한 것이며, 성원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 여정이 시작되는 때부터 성원의 자격에 따르는 권리, 정체성, 관계 등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잠재력을 갖는다. 꿈틀대는 잠재력이 어떻게 현현(顯現)할 것인지는 주체가 경험하는 경로와 그 경로를 구성하는 환경(milieu)에 따르겠지만 가능성의 어떠한 발현도, 그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성원 아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 외려 그 모든 드러남은 ‘성원임’을 예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도 난민은 공동체의 구성 부문 가운데 가장 ‘구성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떠나온 국가가 돌아갈 만한 국가가 된다면 돌아갈 의향이 있을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난민에게 이러한 현상은 이주의 비자발성과 강제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이주민(이민자)인 경우에도 해당 사회에 빠른 시간 내에 착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민 과정에서 자신의 곤경을, 자신이 출신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이민에 필요한 절차와 이민 자격을 증명할 필요는 있었겠지만, 난민과 비교하여 그 절박성은 훨씬 덜한 것이었으라 짐작된다.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성원이 손을 내밀면 공동체의 주류는 그 손을 잡으면 될 일이다. 쉽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누군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로 한발 나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24) 이러한 인식은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 기대고 있다. 화이트헤드(A. N. Whitehead)는 “물리적 사물(현실태)이라는 것은 각각 그 전 영역에 걸쳐 있는 시공간 속의 변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흐름 속에 있는 사물은) 순간적 사실로 간주되기를 한사코 거부한다.”(김영진 2012, 48-9)고 말한다. 이는 ‘순간적 사실’로 드러난 관념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김영진. 2012.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위상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미적 모험. 그린비.
- 김현미. 2018.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2018.12, 210-228.
- 김현미 · 이호택 · 최원근 · 박준구 · 류유선.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 리처드 J. 벤스타인. 김선욱 역. 2018.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한길사.
- 박미숙. 2019.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217-251.
- 박순용 · 서정기. 2014. 이주난민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경험의 탐색: 콜라지의 분석방법에 기초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3), 103-132.
- 박순용 · 서정기 · 박진숙. 2020.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의미탐색과 정책과제. 집문당.
- 박진숙. 2019. 저도 난민은 처음입니다만. 에코팝므·맑은나루.
- 보건복지부. 202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 양혜우. 2019. 누가 혐오를 생산하는가? - 인종적 위계의 하층에 배치된 외국인들. *비교문화 연구* 56, 87-125.
- 용비 토나 · 박진숙. 2013. 내 이름은 용비: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이후.
- 이용승. 2014. 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한국정치학회보* 48(5), 185-206.
- 이유혁. 2017. 정치적 주체로서 난민에 대해서: 난민의 생명정치와 트랜스로컬 정치지형화 그리기. *다문화와 평화* 11(1), 194-224.
- 이은정 · 이용승. 2015. 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OUGHTOPIA* 30(1), 93-134.
- 이재호. 2019. 낯선 이웃: 어느덧 우리 곁에 깃든 한국의 난민들. 이데아.
- 장 지글러. 양영란 역. 2020. 인간 섬: 장 지글러가 말하는 유럽의 난민 이야기. 갈라파고스.
- 한나 아렌트. 이진우 · 박미애 역. 2019. 전체주의의 기원. 한길사.
- Ager, A. & Strang, A.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 Johnson, H. L. 2015. These Fine Lines: Locating Noncitizenship in Political Protest in Europe. *Citizenship Studies* 19(8), 951-965.
- Joppke, C. 2007.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Status, Rights, Identity. *Citizenship Studies* 11(1), 37-48.

- Strang, A. & Alastair Ager. 2010. Refugee Integration: Emerging Trends and Remaining Agendas. *Journal of Refugee Studies* 23(4), 589-607.
 - Weil, Simon. 2002. The Need for Roots: Prelude to a Declaration of Duties towards Mankind. Routledge.
-
- 법무부 보도자료. 2022. 1. 20.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법무부. 출처: <https://url.kr/9atv3s> (검색일: 2022. 01. 21.).
 - 공익법센터 어필 <https://api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경기도 의회 www.ggc.go.kr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 한겨레 www.hani.co.kr

● 투고일: 2022.02.05. ● 심사일: 2022.02.05. ● 게재확정일: 2022.02.14.

| Abstract |

A Refugee Family's Life in Korea: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 as a "Right to have rights"

Lee Yongseung (First Author, Daegu University)

Lee Eunjeong (Corresponding Author, Yeungnam University)

Are domestic settled refugees eligible to become members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looking into the Korean life of a refugee family who is 'already' a refugee but is 'not yet' refugee, and pondering about the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based on this. The paper focused on 'membership,' the right as a community member, as a way to overcome academic inertia that exhibits the difficulties faced by refugees in Korea and suggest what policies are needed to solve these difficulties. Hannah Arendt once referred to the "right to have rights" as a right to belong to a political community. This article reflected on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 community member by taking a refugee family which is the most difficult to become member in Korean society as an example. The sub-components of membership were divided into legal status, community familiarity, social connectedness, and rights, and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in each area were examined.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as soon as migrants, including refugees, enter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they reach the place which to make their actions and opinions meaningful, and begin their journey as members.

〈Key words〉 Refugees, Asylum seekers, Membership, Right to have rights